

● 제267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16. 4. 2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진두생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1031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진두생 의원외 10명
- 나. 제안일 : 2016. 2. 18.
- 다. 회부일 : 2016. 2. 22.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은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계약 심의에서 수탁기관이 부적정한 경우에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와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탁기간의 적정 여부 판단시기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로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 수탁기간의 적정 여부 판단시기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로 함(안 제4조제3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1 개정안의 취지 및 개요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광역치매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임.

## 2 조례개정의 필요성

- 노인인구 증가와 치매 유병률 상승으로 인해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2015년 기준 서울시 치매환자수는 약 123,719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울시 전체 어르신 인구의 약 9.8%로 어르신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20년 약 15만명, 2030년 약 2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서울시 치매노인인구 추정치〉

구분	2008	2014	2015	2020	2030
서울시 전체인구	10,456,034	10,386,339	10,022,181	9,895,548	9,414,828
65세이상 노인인구 (서울시인구 대비%)	890,052 8.5%	1,210,141 11.7%	1,262,436 12.6%	1,470,507 14.9%	2,102,329 22.3%
치매노인인구 (노인인구 대비 %)	74,764 8.4%	115,932 9.6%	123,719 9.8%	152,933 10.4%	210,233 10.0%

자료 :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3년  
출처 : 「2016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업계획서」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2016년

- 치매로 인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한 시설보호 뿐만 아니라 치매 인식개선,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 단계별 적정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치매통합관리’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광역치매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동 조례안에서는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중추가 되고 있는 광역치매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판단을 하는 기간을 기존의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민간위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민간위탁 재계약 규정(안 제12조)

- 안 제4조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 이는 현행 조례에서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서울시 민간위탁의 기본 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위탁연장 판단 결과,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부적합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재위탁절차를 추진하게 될 경우, 현행 조례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인 30일 내에 신규기관을 선정하기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만료기간을 넘겨 센터운영에 공백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민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연장 판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치매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73호, 2015.12.15.시행)이 일부개정되어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위탁절차 시행과 관련하여 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에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 동 개정조례안에 따라 센터의 위탁연장 판단 기간을 계약만료 90일로 연장한다 해도 재계약이 부적합하여 재위탁절차를 수행해야하는 경우, 절차 이행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계약만료 90+a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